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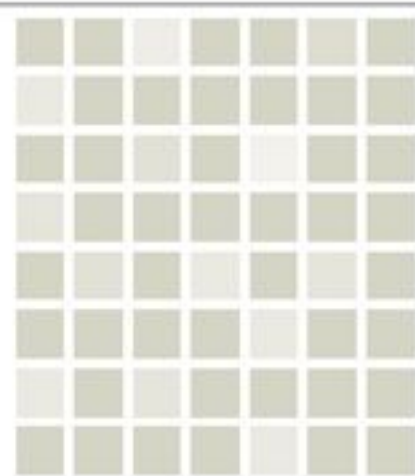
S N U L a w M a g a z i n e

정 의 의 종

2004 vol.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Contents

발간사

- 「정의의 종」 제2호를 내면서... (안경환 학장) 002

특집 ①

동문과 후원인의 지원으로 도약하는 서울법대

- 日新又日新... 발전하는 법대의 교육환경 004
- 후원 소식 및 사연 009

특집 ②

2004 서울법대 신임 교수진을 만나다

- 다양성을 갖춘 법학의 열린 시대를 열다 012

학문의 국제 교류와 학술활동

- 법학연구소 산하 3개 연구센터의 설립과 활동 018
- 일본 대학과의 법학 교류 020

동문인터뷰

-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관을 찾아서 022

초점

- 이라크의 평화를 기원하는 법대 학우들의 염원을 담아서 027

책풀이 한마당

- 2003년 하반기 서울법대 교수진의 최근 저작물 소개 028

동정

- 안경환 학장-미국 5개 법과대학 방문 및 강연 외 031
- 서울대학교 법학 발전재단 소개 032



SNU Law Magazine 제2호

발행인 : 안경환

편집 : 한인섭, 조국, 김영진

발행일 : 2004년 3월

발행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743,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Tel. 02-880-7530
Fax 02-889-7196
<http://law.snu.ac.kr>

「정의의 종」 제 2호를 내면서...

서울 법대인의 소식지 '정의의 종'이 두 번째의 공명(共鳴)을 울린다. 지난 2003년 6월 창간된 이래 법대 캠퍼스에는 많은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일들은 지나치리만치 깊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서울법대가 상징하는 일정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대학에 대한 과도한 찬사도, 어처구니없는 비난도 따지고 보면 한국사회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두고 벌이는 설전이기도 하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우리 대학도 변해야 한다. 국내 제일의 법과대학이라는 좁은 자부심에 안주하지 말고 넓은 세계를 무대로 지적,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이 작은 책자는 단순한 뉴스거리의 집합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용비를 준비하는 서울법대의 청사진이기도 하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우리 대학도 변해야 한다. 국내 제일의 법과대학이라는 좁은 자부심에 안주하지 말고 넓은 세계를 무대로 지적,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의 당위는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갈 지도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한다는 것이다. 학생들도 목전에 닥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졸업 10년, 20년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때 자신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은 책자는 단순한 뉴스거리의 집합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용비를 준비하는 서울법대의 청사진이기도 하다.

바쁜 일상 가운데도 이러한 변화를 소식에 담기 위해 애쓴 원고 집필자와 편집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4.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안효록



특집 ㉑ | 동문과 후원인의 지원으로 도약하는 서울법대

日新又日新... 발전하는 법대의 교육환경

후원 소식 및 사연



日新又日新... 발전하는 법대의 교육환경

– 법대 연구동 증축, 완공 / 법대강의동 강의실의 개축 / 서암홀 개관 / 유민홀 개관 / 최종길 교수 기념홀 개관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완공과 장애인 편의설비 제공

2003년 한 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시설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법학연구동(17동)의 5, 6층 증축사업이 마무리되었고, 학생강의동(15동)은 1층 공간의 로비 겸 휴게실화, 엘리베이터 설치, 강의실 현대화 등 전체적인 내부 시설의 개선이 있었다. 또한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 소강당이 <최종길교수기념홀>로 헌정되면서 내부 낙후 시설의 개보수가 이루어졌다.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이러한 변화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기로 한다.

법학연구동(17동)은 11월 증축공사가 끝나고, 이사와 입주도 거의 마무리되어 다시금 연구동으로서의 모습을 되찾

고 있다. 연구동은 1990년 예산배정이 되어 92년 4층까지 공사를 마치고 법대 소속 교수진과 대학원생들의 연구 및 세미나 공간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교수 수의 증대와 새로운 공간수요에 대응하여 증축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개진되던 중, 2002년 예산을 확보하여 2003년 5층과 6층을 증축하게 되었다. 92년 신축 당시 미래 증축에 대비하여, 건물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보하여 이번 증축공사 및 엘리베이터 설치에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4층까지의 건물 외부가 담갈색 벽돌로 이루어졌다면, 새롭게 증축된 5, 6층은 주황색과 회색의 매끄럽고 밝은 외장재로 외부가 마감되어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건물

법학연구동(17동) 증축에 의해
국제화상회의실, 세미나실,
전시실, 스카이라운지를 갖추게
된 우리법대는 연구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건물 내부와 비슷하게 세미나실
및 교수 연구실이 자리하고 있고, 국제화상회의실, 전시실,
스카이라운지 등이 고안되어 변화하는 법대의 수요에 부응
하게 되었다. 이번 증축 사업으로 법대의 연구 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법대 공간의 확충에 따라 학생강의동
(15동) 쪽에 여유 공간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법학연구동(17동) 612호에 자리한 <서암홀>은 50석
규모의 국제화상회의실로 강연, 토론, 각종 학회 및 국제적
심포지엄 등에 사용되게 된다. <서암홀>은 2004년 3월 5일
현판 제막식으로 첫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현재 SBS회장이

자 법과대학 동창회 부회장을 맡고있는 14기 서암 윤세영 동
문의 출연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학생강의동(15동)은 법학연구동(17동)처럼 대규모 공사
는 없었지만 크고 작은 내부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 법대생들
의 학습 및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15
동의 가장 큰 두 가지 변화는 1층 리노베이션과 엘리베이터
설치이다. 2003년 8월 4일 시작된 법대 15동 1층 리노베이
션 공사는 두 달여의 공사 끝에 마무리 되었으며, 법대 15동
1층 로비는 2003년 10월 14일 <유민홀>이라는 이름으로 개
관되었다. 101호 강의실이 사라지는 대신 테이블과 컴퓨터

법대강의동(15동)의 변화는
서울대 법대 동문의 후배사랑이
모이고, 법대를 아껴주시는
분들의 관심이 함께한다면
단기간에 교육 환경 및 시설의
개선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
함의를 갖는다.



검색대, 소형 회의실이 마련되었다. 학생들이 담소하고, 휴식하며, 컴퓨터 검색을 하고, 즉석 세미나를 여는 등 1층 로비가 마련된 후 학생들의 생활 모습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앞으로도 학생강의동의 1층 로비는 학생들의 면학과 휴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설치 역시 이루어졌다. 엘리베이터 공사는 2003년 6월 24일 시작되어, 4개월여의 공사 끝에 마무리되었고, 엘리베이터는 10월 14일 〈유민홀〉 개관과 더불어 운행이 시작되었다. 15동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됨으로써 법대 15동 내 장애인 이동이 훨씬 나아졌다. 2002년과 2003년

장애인 학생이 입학하면서 법대 내 장애인 관련 시설의 부족에 대한 의견들이 학내 구성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15동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시킨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 밖에 법대 1층 리노베이션 공사 및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와 더불어 법대 15동 양쪽 출입구에 경사로가 새로이 마련되었고, 1층에서 5층까지의 계단도 포천석으로 재포장되었다. 계단 옆 페인트도 새로이 칠해졌다.

15동 내 강의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층부터 4층까지 있는 법대용 중형 강의실 2개, 대형 강의실 2개가 낡은 모

2003년에는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에 많은 시설 개선이 있었다. 이로써 법대 구성원들의 학업, 연구를 비롯한 생활환경이 크게 나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법학도서관의 장서 보유고의 부족, 열람실의 낙후 및 부족, 학생자치공간의 부족 등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습에서 완전히 탈바꿈했다. 강의실 내부 벽은 방음기능이 있는 마감재로 산뜻하게 바뀌었고, 디지털 클래스 시스템과 전 동스크린이 설치됨으로써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강의실 내부의 책상과 의자도 전부 바뀌어 좁은 책상에 법전과 법서를 이리저리 쌓아 놓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법대 15동의 변화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제외하면 동문과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1층 〈유민홀〉은 홍석규 기성회장의 기부로 이루어졌고, 2층은 이철승 동문(78학번), 박병무 동문(80학번)

이 리모델링 비용을 담당했다. 4층은 이름을 밝히기 사양한 기업인의 후원으로 가능했다. 2003년 법대 15동의 변화는 서울대 법대 동문의 후배사랑이 모이고, 법대를 아껴주시는 분들의 관심이 함께한다면 단기간에 교육 환경 및 시설의 개선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 함의를 갖는다.

법대 17동과 15동 이외에는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에서 작지만 의미깊은 시설 개선이 있었다. 2003년 10월 17일 법대는 최종길 교수 제30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거행하고,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을 〈최종길교수기념홀〉로 헌정했다. 추모식은 “정의의 종” 타종식과 함께 시작되어 기념학술회의

2002년과 2003년 장애인 학생이 입학하면서 법대 내 장애인 관련 시설의 부족에 대한 의견들이 학내 구성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15동 엘리베이터 설치에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시킨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로 마감했다. 도중에 최종길 교수의 사망 8개월 전의 육성 녹음이 최초로 공개되었는데, “내일의 희망인 젊은 청년들과 함께 하는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내용이었다. <최종길교수 기념홀> 헌정과 함께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의 낡은 시설을 개보수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소강당 입구에 기념현판이 걸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2003년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많은 시설 개선이 있었다. 이로써 법대 구성원들의 학업, 연구를 비롯한 생활환경이 크게 나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법학도서관의 장서 보유고의 부

족, 열람실의 낙후 및 부족, 학생자치공간의 부족 등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학문연구의 질적 향상, 인적구성원의 확충 및 다양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 및 시설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4년은 지난 해의 성과를 발판삼아 법대 교육환경의 진일보한 개선을 위해 법대 구성원 및 동문들의 애정과 정성이 깃든 관심과 기부가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

문진구 기자

후원 소식

서울대학교 법학발전 재단에 기부한 후원인 수는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개인 265명(익명후원인 포함), 기관(기업체 및 법무법인 포함) 16곳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법대 동문 기수별 단체 모금에는 10, 13, 15, 16, 17, 25, 27, 28, 29, 31, 32, 34, 36, 37회(개별명단 생략)의 총 14개 기수에 해당하는 동문들이 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분들의 후원은 법과 대학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학생들의 면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래는 법과대학 후원에 참여한 분들의 명단이다.(가나다 순)

◆ 동문회

10회 동문회, 13회 동문회, 15회 동창회, 16회 동문회, 17회 동문회, 25회 동문회, 27회 동문회, 28회 동문회, 29회 동문회, 31회 동문회, 32회 동문회, 34회 동문회, 36회 동문회, 37회 동문회

◆ 법인/기업체

(주)한솔, (주)한화, (주)LG, 기업은행, 김&장 법률사무소, 대구 도시가스, 대성그룹, 법무법인 총정,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한누리, 삼정 KPMG, 삼성증권, 정동국제, 제15기 법학연구과정, 한국채권, KCL

◆ 개인

강건수, 강금실, 강만수, 강민구, 강상구(학생), 강성모, 강성목, 강승준, 강용현, 강정혜, 강해근, 고일광, 고종진, 곽영철, 곽현수, 구본세, 권광중, 권선용, 권순전, 권승지, 권영훈, 권오곤, 김환, 김건식, 김기섭, 김기수, 김대희, 김도언, 김문환, 김상숙, 김상준, 김선국, 김성렬, 김수남, 김수동, 김순화, 김시온, 김영훈, 김외숙, 김용갑, 김용균, 김의영, 김의형, 김장한, 김재길, 김재봉, 김정술, 김정원, 김정준, 김정호, 김종구, 김종상, 김종인, 김종호, 김종훈, 김준목, 김진우, 김태병, 김평우, 김학원, 김한기, 김해영, 김현석, 김호영, 김환기, 김환수, 김홍영, 김희중, 남기춘, 남유선, 남정호, 류명건, 명노승, 명노연, 목영준, 문규상, 문대탄, 민병국, 민수광, 민유성, 박덕홍, 박동섭, 박두영, 박문석, 박병

무, 박병호, 박상천, 박선경, 박연철, 박영근, 박영목, 박영희, 박용일, 박원화, 박윤해, 박종렬, 박찬하, 박창제, 방석호, 배명인, 백승혁, 백충현, 변탁, 변동걸, 서강석, 서경환, 시승완, 시원우, 시정화, 성낙송, 성수제, 성영화, 성정옥, 성진혁, 손경식, 송인보, 신국환, 신동운, 신동윤, 신원식, 신현수, 심상명, 안정률, 안정환, 안대희, 안명호, 안홍렬, 양승태, 염기창, 오규호, 오복동, 오세현, 오윤덕, 오정돈, 오종남, 오진환, 위대훈, 유일준, 유재홍, 유창식, 유해수, 유홍수, 윤금중, 윤법렬, 윤용섭, 윤준원, 윤진원, 윤학, 이강국, 이강환, 이경훈, 이균부, 이대순, 이덕모, 이동하, 이백규, 이병래, 이복영, 이석형, 이선희, 이성용, 이성환, 이수성, 이수영, 이승우, 이영환, 이용식, 이용훈, 이은기, 이을선, 이재웅, 이재원, 이재후, 이정자, 이정학, 이종걸, 이종상, 이종왕, 이종철, 이주영, 이준상, 이창희, 이철승, 이태로, 이택만, 이하준, 이한동, 이홍열, 이홍주, 이희석, 임지순, 장선명, 장승화, 장원일, 전수안, 전해영, 정상명, 정상조, 정서용, 정연순, 정영일, 정영진, 정옥순, 정인섭, 정정검, 정창호, 정태균, 조정래, 조대연, 조대연, 조범제, 조장제, 조충환, 차규근, 천정배, 최광준, 최광준, 최병조, 최봉희, 최송화, 최영홍, 최종영, 최충경, 표계학, 하석원, 하철용, 하태권, 한동우, 한명관, 한부환, 한상훈, 한인섭, 허만조, 형광석, 홍석조, 홍승면, 황선태, 황영란, 황의산 □

최용우 기자

정옥순 할머니 장학금 후원의 따뜻한 사연...

지난 2003년 9월, 정옥순 할머니는 서울법대에 1,3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해 주셨다. 대개 후원금을 보내 주시는 분들이 본교 출신이거나 본교 재학생의 친인척인데 반해 정옥순 할머니는 위의 경우와는 다른 특별한 사연으로 후원을 하게 되신 분이다. 정옥순 할머니는 친구의 자녀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힘들게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시고 안타까웠다고 한다. 그 학생은 어렵게 공부하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미국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여 이제는 국내에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정옥순 할머니는 '그 당시 내 형편이 좋았더라면 그 학생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항상 마음 아파하시다가, 이제 자녀도 독립하고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기로 결심하셨다. 항상 마음 아프게 지켜보셨던 친구의 자녀처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지만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 등록금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한 학기 등록금을 약 150만원 정도 추산하고 4년(8학기) 등록금을 계산하여 약 1,300만원이면 재학기간 동안 한 학생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다고 한다. 정옥순 할머니는 평소 근검절약하여 모은 금액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인재가 금전적 고민없이 공부하여 훌륭한 법률가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조그마한 바람이라고 하셨다. 이번 장학금 후원 사연을 통해 우리 법과대학 학생들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덜어주는 법률가로 성장하기를 기원하신 정옥순 할머니의 뜻을 가슴에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송지연 기자



특집 2

2004 서울법대 신임 교수진을 만나다

■ 다양성을 갖춘 법학의 열린 시대를 열다

2004 서울법대 신임 교수진을 만나다 : 다양성을 갖춘 법학의 열린 시대를 열다

- 최봉경, 송옥렬, 구대환, 양현아, 박은정, 송석윤, 이우영, 김형석 교수

서울법대는 2004년 3월 현재 40인의 정규 교수진을 구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인의 신규 교수 증원이 있었다. 그리고 금번 학기부터 3인의 외국인 교수가 채용되어 담당 강의를 외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더 많은 수의 교수진을 확보함으로써 법학 연구의 보다 심도깊고 튼실한 토양을 배양하고 법학 교육의 수요자인 재학생들의 다양한 지적 수요에 부응하며 나아가 국제 경쟁에 뒤처지지 않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역점을 둔 사업이 자그마한 성과를 이룬 것이라 하겠다. 아래에는 2003년 3월 이후 새로이 임용된 8인의 교수진과 외국인 교수 3인방에 대한 이력을 소개한다.

법대
신임
교수



최봉경 교수

- 서울법대 최초의 타대 출신 교수

2003년 4월 1일자로 본교 민법 및 국제사법 담당으로 부임한 최봉경 교수는 87년에 연세대에 입학 학사, 석사 학위를 받고, 96년부터 독일 6년간 뮌헨대에서 독일 민법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며, 2003년 1월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1학기부터 학부 '채권각론'과 대학원 '독일사법연구' 등을 강의하고 있다. 우리법대 최초의 타대 출신 교수로 주목을 받고 있는 최봉경 교수는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부담스러운 일이라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연구와 강의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본인은 아직 서울대의 환경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동안 공부하던 학문적 풍토와 다른 여러 교수님들을 접한다는 점이 오히려 더욱 자극이 되며 서울법대에는 학문적으로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인 것은 전혀 없다며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보였다.

법대
신임
교수



송옥렬 교수

- 사시, 외시, 행시를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 출신 교수

서울법대에 1988년도에 입학, 1992년도에 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비롯한 외무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7년 동 대학에서 석사논문을 쓰고, 98년 여름부터 미국 하버드대에서 회사법을 연구하여 2002년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그 후 잠시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2003년 3월부터 서울법대에서 상법을 담당하고 있다. 송옥렬 교수는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을 좋아하는데, 회사법 만큼 역동적이면서 경제학적인 접근이 잘 맞아 들어가는 분야도 흔하지 않다며 우선 연구의 측면에서 법경제학적인 접근방법을 극단까지 시도해 보고 싶다고 했다. 또한, 강의와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통적인 법학의 틀을 쉽게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송옥렬 교수는 강의에 있어서 정규 학기에서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지만 방학중 계절수업을 이용해서는 자신이 연구하는 현재 관심사를 학생들에게 생생히 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대환 교수

- 20년 특허청 실무 경험을 쌓은 공학도 출신 교수

2003년 2학기부터 영미상사법과 무체재산법 연구 강의를 담당하게 된 구대환 신임 교수는 교수로서는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다. 학부는 서울시립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특허청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그와 함께 관련 법학에 대한 열정을 보이며 지난 2000년 지적재산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영국 셰필드대학(The University of Sheffield) 존 애덤스(J. Adams) 교수 밑에서 석, 박사과정을 끝마쳤다. 특히, 그가 연구 중간과정에서 쓴 논문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와 저작권 보호'는 특허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IPQ에 게재돼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구대환 교수는 '과학기술과 법'이라는 강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임용확정 직후부터 많은 노력을 통해 자료집들을 만들어왔다고 한다. 서울법대 학생들이 예상과는 달리 다들 순수하고 소박하며 학문에 대한 열정이 강한 것 같아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히며 좋은 강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법대 신임 교수



양현아 교수

- 서울법대 최초로 임용된 여성 교수

양현아 교수는 서울법대 최초의 여성 교수로서 1984년 서울대 가정대를 졸업하고 사회학과에 편입한 후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미국 뉴욕의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력만 본다면 법대와는 다소 관련이 없는 듯도 보이지만 가족법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쓰고 지난 2000년에는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에서 공동검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학과 법학의 연계를 추구하는 학자로서 활동해 왔다. 양현아 교수의 임용은 자칫 법학의 테두리에만 한정될 수 있는 법대생들의 시야를 학제간 연구와 인접 학문과의 교류라는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현아 교수는 법대생들이 법여성학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분야 예를 들어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언어이론, 소수자연구 등도 최근 놀랄만한 발전이 있었고 이들 학문이 법학과도 깊이 연결되어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 법대생들이 집착하기 쉬운 고시의 길도 소중하지만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하였다.

법대 신임 교수



박은정 교수

- 생명윤리법의 권위자인 중진 여교수

박은정 교수는 2003년 2학기 서울법대 최초로 양현아 교수가 임용된데 이어, 2004년 2월 18일, 이우영 교수와 함께 두 번째의 여성교수로 임용되었다. 여성 정교수 임용으로는 서울법대 사상 최초이다. 박은정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기초법을 전공하고, 한국법철학회 회장, 유네스코(UNESCO)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연구 활동과 대외활동으로 이미 법철학계의 대표적인 학자, 그 중에서도 생명윤리법의 권위자(저서: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로 잘 알려져 있다. 박은정 교수는 오랫동안 몸담아 오던 前 학교에서 50대에 이르러 학교를 옮긴다는 쉽지 않은 변화를 선택하면서, 기존 우리 학계의 풍토가 외국과는 달리 각 대학간 교수진의 활발한 교류가 드물었고 따라서 금번 서울법대의 자신에 대한 임용이 학문분야에 있어서 원만한 인적교류를 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자로서 후학 양정보다도 연구에 전념하여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강의와 학생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은정 교수의 전공은 기초법으로, 인문적이고 철학적인 바탕 위에서 법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학부에서 '법사상 고전 강독' 과목을 강의할 예정이다. 이 강의는 토론식으로 동서고금의 고전과 명저를 읽으면서 법학도의 법사고의 장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대 신임 교수



법대 신임 교수



송석운 교수

- 학제간 연구를 주관심사로 갖는 헌법 담당 교수

송석운 교수는 1981년도에 서울법대에 입학하여,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1988년도에 학제간 연구가 유명한 독일의 빌레펠트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7년간 수학하였다. 한국으로 돌아와 여러 대학에서 강단에 서다가 2004년 1학기에 본교 법과대학의 헌법 전공 교수로 부임하였다. 송석운 교수는 학부 시절부터 법사회학, 법사학 등 기초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가 역사학적 관점에서 실정법을 연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을 전공하게 되었으며 독일에서도 독일헌정사를 사회학 및 역사학 분야와 연계하여 공부하였다고 자신의 관심분야를 밝혔다. 금번 학기에는 학부에서 '헌법I' 강의를 담당하고 대학원에서는 '비교 헌법'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학부 강의의 경우 사법시험 관련성과 학문성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지나치게 방대한 공부량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시험 준비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현상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에게 고시 합격에만 매달리지 말고 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다방면에서 자신만의 실력을 꾸준히 살려갈 것을 당부했다.

법대
신임
교수



이우영 교수

- 미국변호사 출신의 여성 재원

이우영 교수는 1990년에 서울법대에 입학하여 본교 대학원에서 영미법을 전공하고 하버드에서 법학석사를, 스탠퍼드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후 3년간 미국 변호사로서 로펌에서 송무에 종사하다가, clerkship적인 research attorney에 2년 정도 재직하다가 이번에 박은정 교수와 함께 여성으로서 두 번째로 본교에 임용되었다. 이우영 교수는 다른 세상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보고 싶어 우리와 법체계가 다른 미국에서 유학을 결심했다고 하며, 이때문에 한국에서의 실무경험이 부족한 점을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사학위 과정 중에 국내 로펌에서 인턴쉽을 통해 실무를 접하고자 노력하기도 했고,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산 마테오 카운티의 소년원에서 재소자를 위한 강의를 하거나 ACLU에서 인턴쉽을 하는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바 있다. 공법 분야를 담당하는 이우영 교수는, 금번 학기에 대학원에서는 '정부제도론'으로 미국의 정부제도에 대해 강의하고, 학부에서는 '영어법학'을 강의할 예정이다. 학부 교재는 나중에 실무를 하거나 유학을 갈 때, bar exam 볼 때도 도움이 되도록 알차게 꾸미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법대
신임
교수



김형석 교수

- 서울법대의 최연소 교수

김형석 교수는 1991년에 서울법대에 입학하여 본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과정 중 병역을 마치고 2000년에 독일 유학길에 올라 트리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3년 7월 귀국하여 강사로서 서울법대에서 민법총칙을 강의하다가 이번에 민사법 담당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현재 법대 교수진 중 최연소에 해당하는 김형석 교수는 학생시절은 사님들께서 현재도 재직중이신데 능력이 부족한 자신이 과연 서울법대가 요구하는 교수로서의 자질과 업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아직 특정한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보다도 강의준비와 민법 전반에 걸친 연구에 주력한다고 하였으며 사법시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시험제도가 수험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고생을 강요하는 점은 문제이고, 학생으로서도 법률 실무로 나가는 것도 좋으나 충분히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가능성을 개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독서 등을 권하면서, 대학에 입학하면서 성인이 되었으므로 주위에서 조언을 받는 것도 좋으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할 것을 강조했다. □

법대 뉴스레터 기자단 공동취재

2004년 1학기 서울법대에서 강의를 시작하는 외국인 교수 3인의 이력

미국 - Grace Kang

1963년생으로, Iowa 주립대학에서 경제학으로 학사를,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Doctor를, 영국의 Cambridge 대학에서 철학으로 Master를 받았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United Nation Mission in the former Yugoslavia에서 재직하였고, 2002년에는 Carter Center에서 Election Delegate로도 활동했다. 2003년 이후에는 본교에서 Visiting Full-time Lecturer로 재직하고 있다. 논문으로 Legal Elements for A Comprehensive Solution to the Problem of north Korea's Weapon of Mass Destruction & Criminal Activities(200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Fundamentally Flawed : The need to Realien Bosnia's Power Structure(2001,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외 다수를 저술했다.

Grace Kang



Dr. Peter Gilles

독일 - Dr. Peter Gilles

Peter Gilles 교수는 1938년생으로 민법과 만사소송법 분야를 연구하였다. 1962년에 학부를 마치고 1962년에서 1966년까지 Administration Ministry of Justice(German)에서 Doctor 학위를 받았다. 1972년 이래로 Frankfurt 대학과 Hannover 대학에서 강단에 섰으며, 다른 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강의하기도 했다. Frankfurt 대학에서는 1991년에서 1992년까지 학장을 역임했다. 논문으로 Juristenausbildung 2003(200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Vereinheitlichung und Angleichung(2002, Zeitschrift Fur Zivil Prozess) 외 다수가 있고, 저서로는 Zivilprozessrecht und Internet(2002, Expert Forum Legal System), Procedural Law and Legal Culture(2004, German Report Nomas) 등 다수가 있다.



중국 - Li juqian

1971년생으로 국제법 및 국제경제법을 전공하였으며 Law Department of South-West University에서 Bachelor를, Graduate Law School of CUPL에서 Master를 취득했으며, Graduate Law School of China University에서 Doctor를 취득했다. 이후 China University of Politics and Law에서 강사로 3년, Associate Professor로 2년간 재직했으며, KOICA에서 강사로 1년간 재직하기도 했다. 논문으로서 Limitation of Antidumping Law(Modern Law Science, No.4, 2000) 외 다수, 저서로서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China Finance and Economy Press, 2001) 외 다수가 있다. □



Li juqian

(李 居 迁)

변준석 기자

학문의 국제 교류와 학술활동

-법학연구소 산하 3개 연구센터의 설립과 활동



1961년 4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설연구기관으로 창립되었던 “비교법 연구소”에 그 기원을 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법정 국립연구기관으로서 법의 이론과 실체에 관한 연구 및 연구 결과의 발표와 보급을 통해 한국의 법학교육과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법학연구소 산하에 3개의 각 분야 연구센터가 설치되어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동작업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학술활동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아래는 각 연구센터의 활동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글이다.

금융법 센터는 단순히 금융법 전반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법을 연구하는 학자, 정책담당자, 실제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서로 의견교환을 통하여 합리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금융법 센터는 국내외 학자들과 실무자들을 상대로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각종 강연회 및 프로페셔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업과 금융에 관한 법률저널인 BFL을 2003년 9월호를 창간호로 하여 격월간으로 연 6회 발

간하고 있다. 한편 현재 금융법 센터는 2005년 입법 예정인 금융통합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금융통합법안의 기본방향과 체계를 수립하고, 현행 42개 금융관계 법률들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새로운 금융통합법의 조문을 작성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과 법 센터는 현대인류의 삶과는 한 순간도 분리할 수 없는 정보통신기술, 인터넷상의 정보의 보호와 공유문제, 생명공학 및 보건의료에 관한 법적인 논점들에 대해서 객관적, 체계적,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기술과 관련된 법에 관한 최신정보와 연구성과를 각계에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기술과 법 센터는 기술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한 장·단기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의 법률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구과제의 수행성과를 책자로 발간하고 인터넷상의 홈페이지(<http://www.clt.re.kr>)를 통하여 기술과 관련된 법에 관한 최신 국내·외의 정보와 연구성과의 교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월 1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산학협력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발표된 논문들은 모아서 자료집의 형태로 출간하여 현재 12권의 자료집이 출간되어

있으며 외국 기술 관련 국내·외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학술 교류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법의 지배 센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회사의 후원을 받아 법학 연구소 산하에 개설된 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실현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및 기타 관련활동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법의 지배 센터는 국민의 법의 지배에 관한 의식확산을 위한 연구 및 활동, 공익관련법 연구활동 지원을 중요한 연구 및 활동 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발족 이후 주로 법의 지배 센터 연구시리즈로서 단행본 출간과 연구발표회, 그리고 법의 지배에 관련한 집담회 개최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 수행 예정인 연구프로젝트는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연구, 법치주의의 역사적 기초 연구, 기부 관련 법제의 개선 연구, NGO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법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에 계속 매진할 것이다. ■

조지만 기자



학문의 국제 교류와 학술 활동

-일본 대학과의 법학 교류



2003년 하반기 서울법대에서 개최된 학술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양적 측면에서 풍성함을 자랑한다. 특히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에 소재한 대학과의 학술 교류가 눈에 띈다. 아래는 지난 2003년 10월, 우리 대학에서 개최된 일련의 한일 합동 국제 학술회의의 간단한 요약과 소개글이다.



우선 지난 2003년 10월18일, <서울대BK21 법학연구단-북해도대COE법학연구단 공동심포지움>이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양 학교는 각각 법학 발전을 위한 학술 프로젝트를 각각 진행해 왔는데 - 서울대학교는 BK21프로젝트를, 북해도대학교는 COE 프로젝트 - 상호간 학술교류, 특히 BK21과 COE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공동 심포지움을 기획하게 되었다. 심포지움은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일본에 있어서 PUBLICITY권의 보호(田村善之/北海道大)”, “일본의 직무발명제도 개설(吉田廣志/北海道大)”, “한국에서의 상표 희석화의 현황과 문제점(정상조/서울대)”, “실용신안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구대환/서울대)”이 발표되었고 상법분야에서 “Claim and notice made형 보험과 사고발생



의 不通知(山本哲生/北海道大)”, “전문직 중
사자의 상인성(박상근/서울대)”이 발표되었
으며 비교법 분야에서는 “동아시아의 법조개
혁-일본의 법과대학원을 중심으로 - (鈴木
賢/北海道大)”, “사법개혁과 참여사법으로의
길(한인섭/서울대)”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10월 25일 근대법학
백주년기념관 최종길교수 기념홀에서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주최로 **〈한국과
일본의 치안법과 형사사법제도의 비교검토〉**
란 제하의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 학술회의
는 우리 법대를 비롯한 한국과 일본의 여러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한일공동연구회
의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제와 토론에
임하였는데 관서학원대학(關西學院大學)의
카와사키 히데아키(川崎英明) 교수는 “일본
검찰제도의 문제상황과 개혁과제”라는 주제
로 일본 검찰제도의 문제 상황과 개혁과제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성공회대학교의 한홍구
교수는 “한국의 군대와 사회”란 논문에서 한
국군의 탄생과 성장배경, 한국군의 현황, 군
과 사회와의 관계를 논하였으며 울산대학교
의 이계수 교수는 “의회에 의한 비밀정보기
관 통제”란 제목의 논문에서, 독일, 미국, 한
국의 정보기관의 현실을 분석하는 글을 발표
하였다. 그리고 입명관대학교(立命館大學校)
의 이쿠타 가츠요시(生田勝義) 교수는 “일본
에서의 치안법과 경찰”을, 서울대학교의 한
인섭 교수는 “법무·경찰개혁의 현주소와 전
망”을, 미국 코넬대학교의 서재정 교수는 “미
국의 동아시아 정치·군사정책”이라는 제목
의 논문을 각각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3년 10월 31일, 근대

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동창홀에서 BK21 법
학연구단 한국법 연구센터와 나고야(名古屋)
대학 법학부의 공동주최로 **〈동아시아에서의
법의 교섭(The Interchange of Law in
East Asia)〉**이란 제하의 국제학술세미나가
있었다. 기조발표에 있어서 서원우 교수(서
울법대 명예교수)는 “법의 계수 - 비교법문
화론적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법의 전파를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Rene David,
K. Zweigert, L. Constantinesco 등 비교법
학자의 견해를 인용하고 일본법과 한국법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으며 1
부 발표에서 최종고 교수(서울대)는 “한일간
의 법률교섭사”를 발표하면서 조선과 도쿠가
와 시대의 한국법과 일본법의 교섭과정을 역
사적으로 검토하였다. 鮎京正訓 교수(名古屋
大)는 “Legal Assistance in Asia -
Structuring a Paradigm for Countries in
Transition”의 발표에서 아시아에서 체제를
이행하고 있는 몽고,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
탄 등 법제 정비 및 지원에 대해 소개하였다.
2부 발표에서 安田信之(名古屋大) 교수는 “3
つの法・法理類型と法の3層構造(3개의 법·
법리유형과 법의 3층구조)”를 발표하면서 법
의 3층구조 이론 및 3법리유형이론을 통해
이른바 규범으로서의 법(지령법리)과 제도로
서의 법(시장법리), 문화로서의 법(법의식,
공동법리)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설명하였
고 정금식 교수(서울대)는 “조선시대 주자가
례의 수용과 가족의 변용”의 발표를 통해 조
선시대 주자가례의 수용과 그에 따른 종법적
제사의 확산, 재산상속 문제, 문중의 형성과
가부장제의 등장에 관해서 발표하였다. □

김영진 기자



권오곤 국제유고전범 재판소(ICTY) 재판관을 찾아서



ICTY(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국제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ICTY(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즉 '국제유고전범재판소'에 대해 들어 보았을 것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TY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옛 유고연방에서 자행된 학살, 고문, 강간 등 반 인류범죄에 대한 단죄를 위해 마련된 국제법정으로, 현재 전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히 舊 유고 국가원수였던 밀로세비치에 대한 재판은 그 중요성 만큼이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밀로세비치의 재판을 담당하는 ICTY 재판관 중에 한국인 판사도 한 명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내에서 판사생활을 하다가 2001년부터 ICTY에서 일하고 있는 권오곤 재판관(72학번)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2003년 8월 11일 휴가 차 잠시 귀국한 권오곤 판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자 :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ICTY 재판관으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오곤 판사(이하 권) : 국제법적인 분야 뿐만 아니라 법조의 국제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ICTY 재판관 선발 공문을 보고 지원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건 에피소드지만, ICTY에 지원서를 내게 된 데에는 독일로 유학간 제 배석판사님의 편지 한 통도 한 몫을 했죠. 이 판사님께서 독일로 유학갔다가 잠시 네덜란드 헤이그에 놀러갔었다 봐요. 거기서 이준 열사 기념관에 들렀는데, 기념관장 아주머니가 자기에게 이준 열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준 열사가 만국평화회의에 참석 못 했던 것처럼, 현재 평화궁(Peace Palace)에서 활동하는 ICJ(국제사법재판소)에도 한국 판사가 한 명도 없었다고 했나봐요. 중국 판사도 있었고, 일본 판사도 있었는데 여지껏 한국 판사는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편지를 읽고 난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ICTY 재판관 선발 공문을 보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판사의 국제화를 위해서라도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 : 얼마 전에 법대 송상현 교수님께서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비상임 재판관으로 임명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ICTY와 ICC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권 : 많은 점이 다른데, 우선 우리 ICTY는 ICC와는 달리 시기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제한된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1991년 이후에 발생한, 장소적으로는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성격의 ICC와는 달리 ICTY는 유고전범 일처리가 끝나면 없어지는 임시기구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ICC가 비준국간의 조약에 기초를 둔 기구인데 반해, ICTY는 유엔 안보리에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유엔 가입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 ICTY는 모든 국내재판에 대해서 우월적

국제법적인 분야 뿐만 아니라 법조의 국제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ICTY 재판관 선발 공문을 보고 지원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ICC는 국내재판에 대해서 보충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보충적이라는 말은 국내에서 범죄자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하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ICC가 개입한다는 말이에요. 요컨대 ICTY는 비준국 사이에서만 보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ICC에 비해 좀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수치상으로 봐도 ICTY는 설립된지 10년 가량 되었고, 유엔 예산의 10분의 1을 쓰며, 직원만 1,200명에 달하는 거대조직이에요. 물론 ICC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규모라든가 활성화 여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고, 첫 사건을 잘 골라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 재판을 진행하시면서 느끼는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권 : ICTY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나라 재판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많이 할 수 있어요. ICTY 재판부가 실질적으로는 영미법에 가까운 재판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판사들에게는 사실 새로운 점들이 많이 있죠.

피고인의 방어권, 반대 신문권의 철저한 보장이나 증거개시(開始)제도(disclosure), 선진적인 증인보호제도 등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또한 피의자 신문조서 같이 우리나라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는 서면증거가 그곳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구두주의, 직접주의 원칙에 더욱 충실해서, 판사 앞에서 직접 말로 한 것만을 증거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밖에 법정에서의 모든 말이 속기되어 판사와 검사, 변호사, 피고인 등 소송관계자의 모니터에 뜰 뿐만 아니라 여기에 표시를 하든가 주석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Live-Note 프로그램이나, 사건의 쟁점별로 주장과 입증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Case-Map 프로그램 등도 인상적입니다.

기자 : 재판부내에서 영미계가 암묵적으로라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 : 그런 건 없어요. 특히 판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분위기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물론, 검사 입장에서는 증거 자료를 모으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에 많이 의지할 수도 있어요. 여러 항공사진이나 도청내용 등은 대부분 영미의 정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말이지요. 그러나 재판소의 운영 자체에 있어서 영미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재판도 결국 예전의 뉘른베르크 재판같이, 전쟁에서 이긴 자가 패자에게 책임을 강요하는 장(Victor's Court)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왜 이렇게 밀로세비치에게 많은 것을 보장해주고 양보하면서 재판을 오래 끄냐는 비판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은 이러한 비판들 속에서도 항상 철저하게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원수였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재판이니 만큼 그 중요성을 판사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모든 ICTY 재판관들은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른바 지휘책임(Command Responsibility)의 문제이겠지요. 지휘책임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부터 인정되기 시작한 국제인도법의 새로운 경향으로, 고위직 피고인에 대한 개인 형사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든지 후에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그 공정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자 : 현재 유고 전범 재판의 진행상황 및 주요 쟁점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 :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총 132명 정도이고, 이 중 절차가 개시되거나 진행중인 자가 85명입니다.(실제로 수감중인 사람은 48명) 나머지 47명은 미체포, 공소취소, 사망 등의 이유로 아직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죠. 재판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특히 밀로세비치 재판은 1심 판결만 해도 몇 년 더 기다려야 확정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른바 지휘책임(Command Responsibility)의 문제이겠지요. 지휘책임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부터 인정되기 시작한 국제인도법의 새로운 경향으로, 고위직 피고인에 대한 개인 형사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지휘책임은 요컨대, 전쟁범죄 등의 만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법



률상 또는 사실상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밀로세비치 재판 중 크로아시아 사건과 보스니아 사건에 있어서는, 6개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던 구 유고 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세르비아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밀로세비치에게 크로아시아나 보스니아에서 일어났던 전쟁범죄에 대하여도 이러한 지휘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 밀로세비치가 홀로 재판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권 : 밀로세비치는 ICTY가 'illegal tribunal' 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이고, 재판소에서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로세비치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반대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이 건강상 문제가 있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판부는 영미의 판례에 따라, 피고인이 그의 선택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방어하기로 하는 것은

국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잃지 마세요. 관심만 꾸준히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통한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국제적 수준(global standard)에서 과연 내가 통할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하면서 부단히 자기 계발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그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인정하여, 검찰 측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재판 절차에 관하여 법원에 조언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신청, 반대신문 등을 할 수 있는 'amicus curiae' (법원의 친구) 3명을 선임하여 이

들로 하여금 재판에 관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로세비치는 그가 'associate' 라고 부르는 세르비아 변호사 2명으로부터 법정 밖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 재판부는 그들이 소송 관련 서류를 받거나 피고인을 접견할 때 등에 일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 판사님이 계시는 사실심리부는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요?

권 : 영국 출신의 Richard May, 자마йка 출신의 Patrick Robinson, 그리고 나, 이렇게 3명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판사들이 호선으로 정하게 되는데, 현재 May 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죠. 하지만 여기는 이른바 '주심' 제도가 없어 모두가 동일하게 재판에 관여하고 있어요. 따라서 유, 무죄 평결은 물론이고, 양형에도 제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재판부가 진행하는 본안 재판은 밀로세비치 사건 1건 뿐입니다. 그밖에 판사 1인 마다 2~3건의 Pre-Trial(우리로 치자면 준비절차에 있는 단계)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제가 혼자서 Pre-trial Judge로서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최근에 이감되어온 Jovica Stanisic(우리로 치자면 '국정원장'에 비유될 수 있는 정보책임자)와 Frank Simatovic(일명 Frenki, Red Beret라고 불리는 특수부대 창설자), Sefer Halilovic(보스니아 회교도 장군), Naser Oric(보스니아 회교도 민병대장) 사건 등입니다.

기자 : 마지막으로 권 판사님처럼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권 : 국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잃지 마세요. 관심만 꾸준히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통한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국제적 수준(global standard)에서 과연 내가 통할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하면서 부단히 자기 계발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다른 매스컴과 중복되는 질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문에 최선을 다해 시종일관 미소를 띠며 인터뷰에 응한 권오곤 재판관은 조리있는 말솜씨와 함께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음으로써 기자에게 무척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스스로도 외국에서 활동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는 그의 말처럼, ICTY 활동은 권오곤 재판관 개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모험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매년 국내 법조인 선발 정원 1천명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 법대생들이 추구해야 할 우선적 가치가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

박준엽 기자

이라크의 평화를 기원하는 법대 학우들의 염원을 담아

- 공익법학회 L.I.F.E의 평화카페 행사 소식



서울법대 공익법학회 'L.I.F.E'에서는 2003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법대 1층 로비에서 '이라크 파병 반대 및 이라크 어린이 돕기 평화 카페'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 공익법학회 회원들이 직접 만든 커피, 차, 토스트 등을 판매하여, 수익금 전액을 이라크 지원 단체에 기탁했다. 이 행사에서 모금한 40여 만원은 이라크 민중지원을 위한 시민단체 <평화의 들불>로 전달되어 이라크 아동의 분유 지원, 빈민촌 교육 시설 구축 등에 쓰였다.

또한 L.I.F.E에서는 평화 카페 행사 둘째날인 11월 20일부터 이라크 전쟁의 참상과 평화 회복에의 염원을 담은 대형 결개 사진을 100장으로 나누어 학우들로부터 조각 그림 한 장 한 장에 서명을 받아 모자이크 형태로 조합하여 법대에 게시했다.

행사 마지막날 평화 카페를 정리하면서 L.I.F.E 회원 송영훈(법학 3)씨는 "이번 평화카페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인으로서 전쟁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평화와 재건을 염원하는 마음을 모으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변준석 기자

2003년 하반기 서울법대 교수진의 최근 저작물 소개

공익론 - 공법적 탐구

- 최승화 교수(著)

신자유주의 경제질서하의 행정기능은 규제완화, 민영화, 정부개혁 및 재창출(reinventing government), 아웃소싱(outsourcing) 등으로 엄청난 변화를 요구받지만, 이러한 변화의 요구가 강해질수록 사적 기구에 의한 공익관련 활동을 어떻게 법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더욱 더 제기되며, 또한 이와 관련한 법적 논의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현상적 제한을 염두에 두고 행정의 목적과 가치이며, 중요한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공익개념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를 도모하였다.

즉, 저자는 지금까지 법학분야에서의 공익개념은 논증의 출발점이 아니라, 논증을 종결짓는 암묵적인 종결점으로 취급되어져 왔고, 따라서 공익개념의 논증과 해명 그리고 그 적용에 관련되는 문제점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 책을 통하여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검토의 바탕 위에서 공익의 개념을 법적인 개념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와 같은 공익개념이 법제도적 의미로 정립되는데 있어서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관련한 적실성의 결여는 곧 제도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오늘의 변화하는 행정상황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법의식과 법적 문제의식에 걸맞은 형태의 공익개념을 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 권력과 자유

- 신동운 교수 외(共編著)

오늘날 법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외국의 문헌을 참고하는 일이 많으나, 우리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제사적 관점에서 오늘날의 법이 있게 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효당(曉堂) 엄상섭(嚴祥燮)은 우리 형법전의 정부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입법작업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우리 형법의 아버지이다. 1950년대에 효당 엄상섭은 다방면에 걸쳐 언론에 주옥같은 글들을 기고하였으나, 여러 잡지에 흩어져 실려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편저자들의 노력으로 이 글들 중 형법과 관련된 글들을 한데 모아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이란 제하의 책으로 엮어내게 되었다. 이 책은 관련 참고자료 및 편저자의 해설도 함께 실려 있어서 독자들의 이해를 충실히 돕고 있다.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에서 선생의 법률가로서의 공적을 엿볼 수 있는 반면에 이와 함께 출판된 “권력과 자유”는 선생의 정치논설을 수록하고 있어서 선생의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책은 우리의 형사법전 편찬에 기여한 선생의 사상과 사회적 배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법제사적인 사료이자 형사법의 해석론을 위한 자료이기도 하다. 1957년에 최초로 출판된 “권력과 자유”는 당시 정부에 의하여 판금조치됨으로써 대중적으로 널리 읽히지 못하였다. 복간된 이 책도 일종의 선결적 이해로서 당시의 시대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읽어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사에서 법률가들 중 존경할 만한 인물을 귀감으로 삼아 후세에 기리고 올바른 법률가의 상을 세워간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한국 법학의 내실화를 다지는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

- 권오승 교수 外(共著)

우리나라도 2002년 7월 1일자로 제조물책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제조물 책임에 관한 학계나 법조 실무자, 일반 대중의 관심은 상당히 높아졌으나, 이에 부응할 정도로 법적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개진되지 않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책은 제조물 책임에 관한 법적 문제의 규명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이론적, 해석론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조물책임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법조 실무자들에게 동법의 운용에 관한 길잡이가 될 것과 동시에, 제조물 책임을 부담할 제조업자가 동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여 동법의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법연구 제 7권

- 양창수 교수(著)

양창수 교수는 1991년의 민법연구 제 1권과 제 2권을 출간한 이래로, 2003년 11월에 발행된 본 민법연구 7권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연구활동의 결과를 논문집의 형태로 출간해오고 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민법연구 시리즈는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작업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기회에 모인 연구결과를 모아서 출판해온 것이지만, 문제의 식이라든지 방법의 면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나온 제 7권은 2001년 이래로 발표한 글들로 엮어져 있다. 1999년부터 진행중인 민법개정작업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저술한 ‘최근의 한국민법전개정작업’을 비롯하여 ‘재단법인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독일민법의 규정’, ‘독일의 동산담보개혁논의’, ‘사법절차상의 상계’ 등 모두 13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민법전서론

- 포르탈리스著, 양창수 교수(譯)

민법전서론은 1801년 1월 21일 완성된 프랑스의 '민법전 초안' (소위 공화국 8년 초안)에 부가되어 제출된 것이다. 이 글은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만 하는 유명한 문헌으로서 근대적 민법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민법의 제정에 직접 관여한 사람의 솔직한 생각을 담고 있으므로 고전적 민법의 정신이 온전히 담겨 있다고 역자는 평가하고 있다. 이 문헌은 명백한 시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민법사에 있어서 불멸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금번 출간된 역서는 우리 민법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절차적 정의와 법의지배

- 이창희 교수, 장승화 교수(共編著)

Microsoft사의 "Rule of Law"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를 담은 이 책은 절차적 정의라는 공통된 주제 하에 각 법 분야별로 절차적 정의 확립을 통해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장에서는 적법절차와 절차적 정의라는 제목 하에 헌법상 적법절차에 관한 연구 및 남북한 교류협력과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가 실려있다. 이어서 2장에서는 해고제도, 자본제도와 회사법, 정보통신기술과 주주의 권리행사, 독점규제법에 관한 논문이 경제적 자원배분과 절차적 정의라는 주제 하에 게재되어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정의로운 사법절차의 확립에 관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군사재판제도, 아동의 사법절차상 청문, 행정쟁송과 조세쟁송, 헌법소원심사절차 등의 주제를 다룬 연구가 정리되어있다.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조국 교수(編著)

이 책은 故 조영래 변호사의 12주기를 맞이하여 개최된 학술회의에서의 발표문 및 토론과 이에 관련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는 각종의 국내외 입법례를 수록하여 출간되었으며 우리 형사절차의 제도와 관행이 성폭력 범죄 피해여성, 정신장애자, 비행청소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부에서는 형사절차에서의 취약집단의 보호를 위한 현실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글로 조국교수의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정규원 교수의 "정신장애 : 형사절차와 인권", 최병각 교수의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지위와 권익보호", 김성근 변호사의 "형사절차상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가 차례대로 실려 있으며, 2부에서는 취약집단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입법례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침, 법률안, 각종 입법례, 정신지체자와 아동에 대한 UN 규칙, 지침 등이 수록되어 있다. □

변준석 기자/김지이나 기자



교수 동정



1. 안경환 학장 - 미국 5개 법과대학 방문 및 강연

안경환 학장은 지난 2003년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미국 5개 법과대학(U.C Berkely, Santa Clara, University of Washington, Duke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을 방문하여, 교수초빙 등 학술교류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공개강연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안 학장은 2004년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위원회의(APF)에서 자문법률가(Advising Jurist)로 선출되어 2008년까지 재임한다.



2. 최송화 교수 -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취임

우리 법과대학의 최송화 교수는 지난 2003년 4월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가지식기반의 형성과 지식정보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3. 김동희 교수 -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신임의장 취임

김동희 교수는 2003년 11월, 실질적 의결기구로서 서울대학교 운영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결정하는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신임의장을 맡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서울대학교 운영체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4. 최종고 교수 -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 학회 이사로 선출

최종고 교수가 2003년 8월 12일에서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스웨덴 룬트(Lund)에서 열린 제 21차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 학회(Internationales Verein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 IVR)의 이사로 선출되었다. 이사직은 2년 임기이며, 2년 연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5. 조국 교수 - 정암 형사법 학술상 수상

우리 대학 조국 교수가 2003년 12월 12일, <형사법연구>에 발표한 "수사상 검증의 적법성"이라는 논문으로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임웅)가 수여하는 '정암 형사법 학술상'을 수여받았다. 정암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매년 발표된 형사법 관련 논문을 심사하여 그 중 1편의 최우수논문을 선발하고 상을 수여하고 있다. □

박준엽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세계 최고의 법과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재단입니다.

서울법대 동문, 학부모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 및 기업, 단체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단체로부터 독립되어 서울법대가 진정한 법정의 실현 및 법학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 세계 수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만드는 재단입니다.

한 순간의 동정이나 의무감에서 돈을 내고 마는 일시적 기부가 아니라 모교발전 혹은 대한민국 법학 발전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기부문화의 정신 속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인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진정한 법정의를 통한 인간 존중의 정신이 단순한 구호나 학문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정신의 구현을 위한 바른 인재 양성 및 다양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法文化 실현과 法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위한 노력을 실천해 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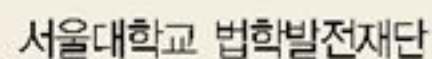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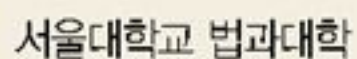
■ 모범적인 재단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헌신적인 공익사업을 통해 공익재단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부자분들의 작은 정성이라도 그 아름다운 만큼이나 소중하게 사용하여 영원히 그 뜻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이 하는 일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법학 연구와 교육을 촉진하고 법 제도와 법 실무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열악한 법학연구 환경 및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갑니다.

1. 법학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2. 한국법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3. 법학 도서관 등 법학정보화 사업 지원
4. 법제도 및 법실무 개선을 위한 사업
5. 학계와 실무계의 학술교류 및 발전을 위한 사업
6. 법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約 定 書

성명(기관명)						
직 장 명	직위 :					
전 화 번 호	자택 : 휴대전화 :		직장 : e-mail:			
주 소 (우편물 발송지)	□□□ - □□□					
본교와의 관계 (해당란에 표시)	☐ 동분 ☐ 학부모 ☐ 법인/단체 ☐ 기타		입학년도 : _____ 학생성명 : _____ 대표자성명 : _____		입학년도 : _____	
약 정 금 액	입금 원 (₩)					
납 부 방 법 (해당란에 표시)	☐ 무통장입금 농협 서울대지점 079-01-434831 예금주: 서울대 법학발전재단 조흥서울대지점 873-03-006786 예금주: 서울대 법학발전재단 ☐ 지로입금 지로번호 6308816 연락주시면 지로용지를 송부해드립니다) ☐ 자동이체(CMS) 은행명: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_____					
납 부 기 간 (해당란에 표시)	☐ 일시납부 년 월 일까지 납부 ☐ 분납납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납부					
참 여 내 용	기금용도 () 법학발전 () 환경개선 () 장학기금 () 도서 () 연구소 () 위임 기타 부여하실 기금명칭(단, 약정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및 지출 용도 기금명칭 : 지출용도 :					

본 재단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이므로 세법상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